

## 비수도권 지역인재 세부기준

### 비수도권 지역인재

대학까지의 최종학력(대학원 이상 제외)을 기준으로 서울·경기·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 학교(지방대학)를 졸업(예정)·중퇴한 자 또는 재학·휴학 중인 자

\* 기획재정부 「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, 전자문서 작성지침(24.3월)」 기준에 따름, 아래 열거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인사혁신처 「통합인사지침」 참고

### 비수도권 지방학교

#### 가.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

- (1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'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학(사이버대학은 제외), 기술대학, 각종학교'
- (2) 「고등교육법」 제24조상의 분교로서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

\* 고등교육법 제24조상의 분교 여부는 해당 학교에 직접 확인

\*\* (예시) 고려대 세종캠퍼스, 동국대 경주캠퍼스,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

#### 예 시

-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: 지방대학에 해당함
  -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
-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: 지방대학에 해당하지 않음
  -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 24조상의 분교가 아님

- (3)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·경기·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

- (4)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

**나.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(예시)**

- (1)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서울·경기·인천 지역대학
- (2)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
- (3) 사이버대학, 디지털 대학 등 「평생교육법」상의 평생교육시설
- (4)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

**다.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**

- (1)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
- (2)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·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- (3) 대학원 및 사이버·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,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,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